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0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64434 취득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redacted]

피 고 [redacted]

[redacted]

변 론 종 결 2019. 8. 29.

판 결 선 고 2019.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본세 166,507,000원의 부과처분 중 33,132,3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가산세 39,029,220원의 부과처분 중 7,766,21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본세 28,568,200원의 부과처분 중 1,893,270원을 초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0

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가산세 3,839,560원의 부과처분 중 254,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8. [redacted]광역시 [redacted] B[2018. 12. 5.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C으로 변경되었다]를 본점으로 하여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9. 21. [redacted]시 [redacted]구 D 근린생활시설 7,223.8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7,152,619,61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0,273,340원, 지방교육세 11,444,190원, 농어촌특별세 14,305,230원 등 합계 226,022,7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점에 해당하는 [redacted]시 [redacted]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대도시 내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누락된 비용을 추가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9,519,215,22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 205,536,220원, 지방교육세 32,407,760원, 농어촌특별세 2,684,650원 등 합계 240,628,6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0

라. 원고는 2017. 5. 8.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0. 16.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10. 11.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지점의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재조사를 거친 뒤 2019. 1. 10. 원고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205,536,220원, 지방교육세 32,407,760원, 농어촌특별세 2,684,650원 등 합계 240,628,6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9,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무소는 원고의 인적 · 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아 취득세 중과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법인의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사무소가 원고의 지점인 것을 전제로 원고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2. 8. 본점을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B', 사업목적을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같은 달 26. [redacted]시 [redacted]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0

2) G은 설립 당시부터 2016. 4. 2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G은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는데(이하 개별 법인은 상호명으로만 기재한다), 원고, H, I, J은 모두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고, I를 뺀 나머지 원고, I, J의 본점은 모두 '[redacted]광역시 서구 C'이다. I의 법인등기부등본(갑 제20호증) 기재에 의하면, G의 주소는 '[redacted]시 K아파트 L호'에서 2009. 10. 5. '[redacted]시 [redacted]구 M아파트, N호', 2012. 8. 30. '수원시 영통구 O아파트, P호'로 각 변경되었다가 2014. 10. 8.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Q아파트, R호'로 변경되었다.

법인명	대표이사 재직 기간	비고
원고	2011.12.8.~2016.4.25.	현재 감사로 재직 중
H	2009.1.20.~2017.3.13.	현재 사내이사로 재직 중
I	2009.1.20.~현재	
J	2009.1.1.~현재	2007.3.30.부터 대표이사 보임 전까지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대표이사 변경내역 확인 안됨)

3) 원고는 2014. 3. 3. H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7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S는 본래 J 소속이었으나 J의 인사명령으로 그 소속이 H으로 변경되어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되었다.

4) I는 2014. 5. 1. 주식회사 T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redacted]시 U건물, F호(이 사건 사무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기간 2014. 6. 5.부터 2015. 7. 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갑 제21호증)의 임차인 란 하단에는 '연락처: S 소장 V'이라 적혀 있다. 한편, 이 사건 사무소는 2008. 8. 1.부터 2014. 2. 28.까지 및 2016. 4. 1.부터 2016. 11. 30.까지 J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0

5) 피고의 세무조사 시 S의 진술내용과 S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업무현황표(을 제19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이 사건 건물 준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근무지	성명, 직위	근무 현황	소속 법인
[redacted]시 [redacted]구 W 건물 5층	X 차장	이 사건 토지 매입 및 인허가	2006.12.6.부터 현재 I
	Y 주임	토지 매입 자금집행, 각종 제세금 처리	2009.2.6.부터 현재 J
[redacted]시 [redacted]구 U 건물 2층(이 사건 사무소)	X 차장	사업·자금계획승인, 설계 검토	[S] 2008.8.1.~2014.2.28.J 2014.3.1.~2016.3.31.H 2016.4.1.~2016.11.30.J [Z] 2012.9.3.~2014.2.28.J 2014.3.1.~2014.5.26.H
	S 대리	이 사건 공사 착공 및 준공	
	Y 주임	자금집행 및 각종 제세금 처리	
	Z	이 사건 건물 착공 준비	

6) S는 이 사건 건물의 전기시설 부담금 지급을 청구하는 2015. 1. 13.자 원고의 '공사 및 용역 지급 품의서'와 2015. 2. 24.자 원고의 '기업일반대출금 실행요청의 건'을 직접 기안하고, 원고의 차장 및 사장의 결재를 받았다. S는 2015. 7.경 원고 대표이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주변 가로등 이설협의에 관한 민원 및 도로점용 허가 청구서를 직접 기안하였다. 또한 S는 2015. 2. 25. AA은행에 이 사건 건물 관련 대출금의 인출을 요청하는 원고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를 기안하였고, 2015. 9.경에는 H 대표이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계약 관련 기성금을 청구하는 공문을 기안하였다.

7) J은 2015. 9. 24. S, A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015. 10. 1.부 인사명령을 발령하였다.

성명	소속 및 직책	근무지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S	지사 건축과장	AC 현장	지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0

AB	AD아파트 현장 공사대리	AC 현장	AD 아파트	

8) I는 2016. 1. 7. 본점을 '[redacted]시 AE건물, AF동'에서 이 사건 건물 AG호로 이전하였다(이하 이전한 사무실을 '변경된 사무소'라고 한다). 변경된 사무소에서는 X, S, Y, Z, AH이 근무하였다.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사용승인신청서, 설계 · 감리계약서, 위탁관리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AI), 취득세 신고서, 대출실행요청 공문에 기재된 전화번호(AJ)와 팩스번호(AK)는 모두 I 명의로 가입된 것이다.

10) 담당 세무공무원은 2016. 10. 24. '[redacted]광역시 서구 B'를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였으나, 원고의 본점으로 구획된 별도의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건물 1층에 부착된 층별 안내도에는 3층에 'H, AL'이, 4층에 'AM, J'이 위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 건물의 3층 입구에는 'H', 4층 입구에는 'AM'의 상호가 각 부착되어 있었으나 원고의 상호 표시는 확인되지 않았다. J 소속 회계팀 부장 AN은 J 소속 직원들이 원고의 제반 업무도 겸업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세금 및 기타 신고도 본인이 담당했다고 진술하였다.

11) 원고는 AO와 사이에 '[redacted]광역시 서구 B'에 관하여 임대료를 1,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12. 7.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에 대한 2017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무상태표상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2, 3, 4, 5, 11, 12, 13, 14, 15, 16, 17, 20, 21, 22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7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0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전단,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 ·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인적 설비'란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법인의 지휘 · 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4023 판결 참조).

2)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 2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4. 3.경 무렵부터 대도시 내에 있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지점으로 사용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S는 이 사건 사무소에서 근무하며 H 대표이사 명의로 원고에 대하여 기성고 공사대금 신청서를 기안하는 동시에 원고 대표이사 명의로 은행에 대하여 공사 관련 대출금 지급 신청서를 기안하였다(원고는 H이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기 때문에 현장대리인인 S가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0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주체는 H이 아니라 J이다). S는 원고 대표이사 명의로 공사와 관련된 민원 신청을 하였고, 변경된 사무소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 관리도 담당하였다. S가 담당한 위와 같은 업무는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현장관리인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S는 본래 J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 건물 착공일 무렵 그 소속이 H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다시 J으로 복귀하였다. 당시 원고, J, H의 대표이사는 G으로 동일하였다.

I는 [redacted]시 [redacted]구 W건물 AP호를 임차하였고, X, S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I는 2014. 5. 1.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 이 사건 사무소를 임차하였고, X, S 등 앞서 본 직원들이 그대로 이 사건 건물의 착공 및 준공 업무를 진행하였다. X, S, Y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변경된 사무소에서 그대로 근무하며, 여전히 원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S를 비롯하여 이 사건 사무소에서 상근하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이 사건 건물 준공과 관련한 근무를 담당한 직원들은 그 소속 법인과 관계없이 원고의 지휘 · 감독 아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원고의 2014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원고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직원급여는 40,522,500원(2014년도), 43,500,000원(2015년도)에 불과하다. 원고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직원 AQ에게 38,322,500원(2014년도), 43,500,000원(2015년도)을 지급하였는데, AQ가 정작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이 사건 건물 준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였는지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2016년도 기준 직원연락망에는 AQ 차장은 경영관리본부 부속실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0

③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를 주소지로 하여 [redacted]공사, [redacted]회사, [redacted]공사, [redacted]공단, [redacted]회사 등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그 후에도 변경된 사무소를 주소지로 하여 [redacted]공사, [redacted]협회 AS, 법무법인[redacted]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무소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원고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진 장소로서 그 명목상 임차인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지점에 해당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훈

판사 설정은

판사 강성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0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2015.7.24>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3.12.26>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12-20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5. 11. 16. 행정자치부령 제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끝.